

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시행세칙

2004. 3. 1 제정
2006. 3. 1 개정
2009. 9. 1 개정
2011. 3. 1 개정
2014. 3. 1 개정
2015. 3. 1 일부개정
2016. 3. 1 일부개정
2017. 9. 1 일부개정
2018. 9. 1 일부개정
2019. 9. 1 일부개정
2021. 3. 1 일부개정
2023. 3. 1 일부개정
2024. 3. 1 일부개정
<교육대학원행정팀>

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함)이 교육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함)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교육목표) 본 대학원은 광범위하고도 심오한 교육이론 탐구와 실습을 통해 개인의 성장·발달과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능력과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인적 교사 및 교육상담전문가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.

제3조 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

-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월(5학기)로 한다.
- 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.

제4조 (수업연한 단축) 본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과정 동일전공에 입학하였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을 6개월(1학기) 단축할 수 있다.

제5조 (수업 및 출석)

- ① 수업은 학기 중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학점 당 최소 15시간 이상 수업한다.
- ② 출석이 전체 강의시간의 2/3에 미달하는 원생은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.

제6조 (입학 및 재입학 지원 자격)

- ① 석사과정에 입학할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(예정)생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2. 추가로 중등2급 교원자격증, 전문상담교사 2급 교원자격증, 전문상담교사 1급

이수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의 지원자격은 교육부 관련법령 및 고시,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근거,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.

3. 상기 제2호의 희망 자격증 및 이수증은 입학지원서 제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입학 후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상담심리교육전공 재학생 중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증 및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- ② 본 대학원에서 제적된 원생이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- ③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 이전과 동일한 경우,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- ④ 재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 휴·복학만기일 이내의 별도로 공지된 기간 내에 신청한다.

제7조 (시험 및 연구과제)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매 학기말에 실시하며 학기중간에 실시하는 시험은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다.

제8조 (전공의 변경)

- ① 입학 후 전공은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차 학기 이수 직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전공을 변경하는 원생은 제2차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1. 전공변경 신청서
 2. 전공 주임교수의 승낙서
 3. 이수학점 및 성적 일람표

제9조 (등록)

- ① 등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완료되며, 학기 수는 등록횟수에 의한다. 단, 등록금을 납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원생이라 하더라도 해당 학기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등록금에 관해서는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39조부터 제41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4. 3. 1.>

제10조 (휴학)

- ① 휴학하려는 원생은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23조 제4항의 휴학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군복무와 출산(임신), 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신청 기간 외 사유발생시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3. 1.>
- ②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의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. 단, 군입대휴학은 의무복무에 한정한다.
- ③ 출산(임신), 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, 자녀 1명당 각각 1년 이하, 총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3. 1.>
- ④ 현직교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학기 중 교육부 또는 관할 시·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수휴학할 수 있다.

- ⑤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, 본 대학원의 휴학기간은 5학기로 한정한다. <개정 2024. 3. 1.>
- ⑥ 제2항의 군복부, 제3항의 출산(임신)·육아, 제4항의 연수로 인한 휴학은 제5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단, 연수휴학은 1회에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4. 3. 1.>

제11조 (복학, 자퇴, 제적)

- ① 복학에 관한 사항은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31조부터 제32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4. 3. 1.>
- ② 자퇴에 관한 사항은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33조부터 제34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4. 3. 1.>
- ③ 휴학기간이 경과되거나 등록하지 않은 원생은 제적한다.

제12조 (수강신청)

-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수강신청은 매학기 10학점(선수와목 포함)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. 다만, 연구지도 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는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3. 1.>
- ③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4, 5학기 재학생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유사전공과목을 6학점까지 수강하여 전공선택 학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. 단, 영재및특수교육 전공에 한하여 학기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 (수강신청 정정) 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 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제14조 (수료학점)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다음과 같다.

1. 논문중심과정(30학점 이상)
 - (1) 교직과목: 6학점 이상
 - (2) 전공과목: 전공필수과목 포함 20학점 이상
(단, 기업교육·평생교육전공은 최소 9과목 20학점 이상)
 - (3) 선수와목: 지정받은 학점
 - (4) 연구지도 과목: 4학점
2. 학점중심과정(38학점 이상)
 - (1) 교직과목: 6학점 이상
 - (2) 전공과목: 전공필수과목 포함 20학점 이상
(단, 기업교육·평생교육전공은 최소 9과목 20학점 이상)
 - (3) 선수와목: 지정받은 학점
 - (4) 연구지도 과목: 4학점
 - (5) 선택과목: 8학점 이상(선택과목 8학점 중 4학점 이상은 전공과목에서 취득)

제15조 (학점인정)

- ① 연구과정 수료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에 의하여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 단 공통영어는 이수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②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(국방대학원, 국방참모대학, 육군대학 등)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 대학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
- ③ 석사학위 입학생 중 본 대학원 입학 전에 다른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동일전공으로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, 동일한 전공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 단, 평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성적만 인정한다.
- ④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전공 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외의 타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
- ⑤ 본 시행세칙 제8조에 의하여 전공을 변경한 자는 전공변경 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 변경된 전공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.
- ⑥ 본 대학원 졸업생 및 수료생이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수료요구학점 중 교직과목(6학점 이상) 이수를 면제한다. <개정 2024. 3. 1.>

제16조 (선수과목) 타전공 입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교과과정의 이수지정과목(이하 "선수과목"이라 함.)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전공은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.

제17조 (지도교수)

- ①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원생은 제3차 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지도교수는 2학기 이상 학업,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여야 한다.
- ③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원생은 지도교수 신청 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1회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8조 (지도교수 변경)

- ①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,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-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4. 3. 1.>

제19조 (학위청구 자격) 석사학위를 청구하려는 원생은 본 시행세칙 제14조에 규정된 학점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논문중심과정

- (1) 학위청구 자격시험(이하 '자격시험'이라 함.)에 합격한 원생
- (2) 지도교수를 배정 받고 논문계획서를 승인받은 원생
- (3) 연구지도 2학기(4학점)
- (4)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원생

- (5)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1회 이수한 원생
- 2. 학점중심과정
 - (1) 자격시험에 합격한 원생
 - (2) 지도교수를 배정받고 추가학점 이수 계획서 및 사례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원생
 - (3) 연구지도 2학기(4학점)
 - (4) 평균 평점 3.5 이상인 원생
 - (5)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1회 이수한 원생

제20조 (학위청구 연한 및 특례)

- ① 학위청구를 위한 논문(학점중심과정인 경우 사례보고서) 제출은 수료일자로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24. 3. 1.>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(학점중심과정인 경우 사례보고서)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원생(이하 특례대상 원생이라 함)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24. 3. 1.>
 - 1.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, 질병, 가사, 임신·출산, 시국사건 관련 등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.
 - 2. 특례대상 원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(외국어시험, 전공시험, 교직시험)에 합격하여야 하며, 종전 자격시험 합격의 효력은 유지된다. <개정 2024. 3. 1.>
 - 3. 특례신청이 허가된 원생은 학위청구논문을 통과하는 학기까지 매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3. 1.>
 - 4. 특례대상 원생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,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4학기 이내에 학위청구논문(학점중심과정인 경우 사례보고서)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3. 1.>
 - 5. 특례대상 원생이 재적하였던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전공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6. 특례대상 원생은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- <제목 개정 2024. 3. 1.>

제21조 (연구지도보고서) 연구지도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4학기 및 5학기 이상 재학생은 연구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3. 1.>
<제목 개정 2024. 3. 1.>

제22조 (학위논문지도료)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(학점중심과정인 경우 사례보고서)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논문(연구)지도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3. 1.>

제23조 (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)

- ①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1학기 이상 논문지도료를 받은 후 지도교

수의 승인을 얻어 중간발표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지도교수, 전공 주임교수 및 관련 교수의 참석하에 중간발표를 할 수 있다.

제24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)

-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, 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를 행정팀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3. 1.>
- ②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0월로 하며, 제출일시 및 논문양식 등에 관한 것은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4. 3. 1.>

제25조 (자격시험의 종류)

- ① 자격시험은 외국어, 전공, 교직으로 나뉜다.
-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, 일본어, 한문 과목으로 시행하며, 그 밖의 외국어는 학문의 성격에 따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1.>
 - 1. 영어교육전공: 종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TOEFL PBT 580점(CBT 237점, IBT 92점) 이상 또는 TWE 5.0 이상, New TEPS 426점 이상, IELTS 6.5급 이상 취득한 자 <개정 2024. 3. 1.>
 - 2. 가정교육전공, 교육방법전공, 교육사철학전공, 교육정보전공, 기업교육전공, 도덕·윤리교육전공, 상담심리교육전공, 수학교육전공, 유아교육전공, 컴퓨터교육전공, 평생교육전공
 - 3.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전공: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공통영어를 이수한 자와 종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TOEIC 730점 이상 또는 TOEFL PBT 520점(CBT 190점, IBT 68점) 이상, New TEPS 294점 이상, IELTS 5.5급 이상 취득한 자 <개정 2024. 3. 1.>
- ③ 전공시험은 전공(필수)과목으로 시행한다. 다만,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시험 지정 과목에서 A(4.0)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과목의 전공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1.>
- ④ 교직시험은 양성과정(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)의 경우 교직필수(이론) 중 2과목을, 재교육과정(현직교사 및 교사자격증 취득 비희망자 등)의 경우 교직필수(이론) 또는 교직선택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. 다만,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서 3과목의 평균이 A(4.0)이상이면 교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, 이수한 교직과목에서 2과목의 평균이 A(4.0)이상을 받은 경우 2과목 중 1과목을 면제할 수 있되 나머지 1과목은 A미만을 받은 교직필수(이론) 또는 교직선택 중에서 선택하여 응시한다. <개정 2023. 3. 1.>

제26조 (자격시험 응시자격)

- ① 외국어시험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원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, 전공시험과 교직시험은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.
- ② 자격시험의 응시회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- ③ 본 대학원 졸업생 및 수료생이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이전에 외국어시험 또는 교직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면제한다.

제27조 (자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)

-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원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3. 1.>
- ② 자격시험은 매학기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시험의 일시와 원서 접수 등에 관한 것은 사전에 따로 공고한다.

제28조 (자격시험 합격사정)

- ① 시험성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- ② 자격시험은 각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제29조 (논문심사위원)

- ①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- ②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,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
제30조 (논문심사)

-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창의성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.
- ②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, 불합격으로 하며, 합격은 심사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③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해진 기일까지 논문을 수정하고 논문수정확인서를 작성하여,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사지원부에 제출한다.

제31조 (학위수여 심의) 자격시험, 논문심사의 결과 등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32조 (장학금)

- ①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원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교육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」에 정한다. <개정 2024. 3. 1.>

제33조 (우수논문 시상)

-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원생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.
- ② 우수논문은 인문, 어문, 사회, 자연, 예체능계열로 구분하여 선정하며,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우수논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- ③ 우수논문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은 제 항의 계열을 고려하여 구성하고,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겸한다.

제34조 (공개강좌)

-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한 원생에게 [별지 서식 1]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-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, 개설기간,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

시마다 대학원장이 정한다.

- ③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이수한 원생에게는 대학원장이 [별지서식2]의 해당분야 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35조 (학위청구방식 변경)

- ① 학위청구방식은 단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학위청구방식의 변경은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1. 학위청구방식 변경신청서
 - 2. 학위청구 논문계획서(논문과정으로의 변경신청한 원생만 해당)

제36조 (대학원위원회의 회의)

- ①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.
- ② 그밖에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"위원회설치운영규정"을 준용한다.

제37조 (교원자격 취득)

- ① 중등2급 교원자격증, 전문상담교사 2급 교원자격증,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증, 중등2급 부전공 자격은 본 시행세칙 제6조 및 본 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격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.
- ② 상기 1항의 자격증 및 이수증은 입학지원서 제출시 선택하여야 한다. 단, 중등2급 부전공 자격은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승인한다.
- ③ 그 외의 교원자격취득 요건은 관련 국가법령에 따른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
 - ① 이 시행세칙 제4조 및 제8조는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② 이 세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세칙 시행 후까지 지속되는 사항은 해당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
 - ①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12조 제4항, 제14조 제2호, 제15조 제1항, 제25조 제4항 개정)
 - ② 단 제25조 제4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1항은 2006학년도 연구과정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
 - ① 제25조(자격시험의 종류) 제2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단, 제3항과 제4항은 2008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12조(수강신청) 제2항은 2009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 단, 기업교육전공과 평생교육전공은 입학 학번과 상관없이 매학기 1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
 - ③ 삭제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3조, 제19조, 제25조 개정)
2. (경과조치)
 - ① 제15조 제3항은 2007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 - ② 제19조 5호 및 제25조 제4항은 2011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6조, 제12조 제4항, 제19조 개정)
2. (경과조치) 제12조 제4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2조, 제15조, 제19조, 제21조 내지 제 11조, 제37조 신설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 내지 제18조, 제20조, 제22조 내지 제36조 조번호 변경)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3월 1일 기준 재적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4조, 제19조 개정)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3월 1일 기준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부칙개정)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세칙 14조 및 19조 2항 2조는 2015년 9월 1일 기준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6조, 제1항 개정)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세칙 제6조제1항제3호는 2018년 9월 1일 기준 재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7조제3항 신설)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세칙 제17조제3항은 2019년 3월 1일 기준 재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7조제4항 신설, 제19조 개정)
2. (적용대상)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25조 개정)
2. (적용례) 이 개정 세칙 제25조제2항제2호, 제25조제3항, 제25조제4항은 2023년 3월 신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9조 내지 제12조, 제15조, 제18조, 제20조 내지 제22조, 제24조, 제25조, 제27조, 제32조 개정, 제20조, 제21조 제목 개정)
2. (적용례) 이 개정 세칙 제20조제2항제2호는 2025학년도 1학기 특례신청자부터 적용한다.